

제목 : 「계좌통합관리서비스 이용약관」

항상 하나은행을 이용해 주시는 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.

「계좌통합관리서비스 이용약관」이 아래와 같이 개정되어 안내드리오니 이용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- 약관명 : 「계좌통합관리서비스 이용약관」
- 개정 시행일 : 2022년 12월 27일 (화)
- 기존 가입고객에 대한 변경약관 적용 여부 : 적용
- 주요 변경 내용 : 고객과 금융기관간 계좌통합관리 서비스 이용에 관한 제반사항을 정하는 대고객 약관에 내계좌 지급정지 서비스 추가

현 행	개 정 (안)	비 고
<p>제 1 조 (목적) <생략></p> <p>제 2 조 (용어의 정의)</p> <p>①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의미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.</p> <p>1. "계좌통합관리서비스"(이하 "본 서비스"라 함)라 함은 고객이 금융회사에 개설된 본인 명의 계좌(상호금융회사의 미지급출자금, 미지급배당금 포함) 및 카드 정보 등을 일괄조회하고, 일정 잔고이하의 비활동성 계좌(금융투자회사의 경우 다른 재산이 없고 현금으로만 보유한 계좌)를 잔고이전·해지 할 수 있는 서비스를 의미합니다.</p> <p>2. ~5<생략>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u><신설></u></p>	<p>제 1 조 (목적)<좌동></p> <p>제 2 조 (용어의 정의)</p> <p>①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의미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.</p> <p>1. "계좌통합관리서비스"(이하 "본 서비스"라 함)라 함은 고객이 금융회사에 개설된 본인 명의 계좌(상호금융기관^의 미지급출자금, 미지급배당금 포함) 및 카드 정보 등을 일괄조회하고, 일정 잔고이하의 비활동성 계좌(금융투자회사의 경우 다른 재산이 없고 현금으로만 보유한 계좌)를 잔고이전·해지하며, 금융사기 피해예방을 위한 "계좌 지급 정지" 등을 할 수 있는 서비스를 의미합니다.</p> <p>2. ~5<좌동></p> <p>6. "계좌지급정지"란 고객이 금융사기 피해예방을 위하여 지정한 본인 명의 계좌에 대하여 자동이체를 포함한 모든 출금·고 거래가 정지되는 것을 의미합니다. 다만, 금융투자회사 계좌지급정지의 경우 매매거래는 제외됩니다.</p>	<p>문구수정 (상호금융기관으로 용어통일)</p> <p>내계좌지급정지 반영</p> <p><신설> 내계좌지급정지 반영</p>

<p>6~12 <생략></p> <p>13. "핀테크기업"이라 함은 금융결제원으로부터 계좌통합관리서비스 이용 승인을 받아 금융결제원과 이용계약을 체결한 기업을 의미합니다.</p> <p>14. <생략></p> <p>제 3 조 <생략></p> <p>제 4 조 (이용채널) 본 서비스는 금융결제원이 운영하는 계좌통합관리서비스 홈페이지 및 계좌통합관리서비스 애플리케이션과 <u>은행창구, 금융회사 및 핀테크기업</u> 비대면채널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.<신설></p> <p>제 5 조 ~제 8 조<생략></p> <p>제 9 조 (핀테크기업 비대면채널 이용방법) 고객은 핀테크기업의 비대면채널에서 해당 <u>핀테크기업</u> 인증 정책에 따른 본인인증 및 휴대폰인증 등을 거쳐 서비스 이용등록 후 이용할 수 있습니다.</p> <p>제 10 조 (조회) ① 고객은 제 4 조에 따른 이용채널에서 제 5 조부터 제 9 조까지 이용방법에 의한 본인인증 완료 후 비밀번호 확인 없이 금융회사에 개설된 계좌 및 <u>카드 정보</u>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. 다만, 제 8 조에 따라 금융회사가 제공하는 비대면채널의 경우 금융회사가 계좌 및 카드정보 조회서비스 제공여부를 선택할 수 있으며, 고객이 제 7 조에 따라 은행창구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활동성 계좌에 대한 상세정보를 확인할 수 없습니다. ② 본 서비스에서 조회되는 계좌 및 <u>카드정보</u>는 계좌통합관리서비스</p>	<p>7-13 <좌동></p> <p>14. "<u>계좌통합관리업무 이용기관</u>"(이하 "<u>이용기관</u>"이라 함)이라 함은 금융결제원으로부터 계좌통합관리서비스 이용 승인을 받아 금융결제원과 이용계약을 <u>체결하고 계좌통합관리서비스를 이용하는 기관을 말합니다.</u></p> <p>15. <좌동></p> <p>제 3 조 <좌동></p> <p>제 4 조 (이용채널) 본 서비스는 금융결제원이 운영하는 계좌통합관리서비스 홈페이지 및 계좌통합관리서비스 애플리케이션과 <u>금융회사 창구, 금융회사 및 이용기관</u> 비대면채널 등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. <u>단, 이용기관 비대면채널의 경우 일부 서비스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.</u></p> <p>제 5 조~제 8 조 <좌동></p> <p>제 9 조 (<u>이용기관</u> 비대면채널 이용방법) 고객은 <u>이용기관</u>의 비대면채널에서 해당 <u>이용기관</u>의 인증 정책에 따른 본인인증 및 휴대폰인증 등을 거쳐 서비스 이용등록 후 이용할 수 있습니다.</p> <p>제 10 조 (조회) ① 고객은 제 4 조에 따른 이용채널에서 제 5 조부터 제 9 조까지 이용방법에 의한 본인인증 완료 후 비밀번호 확인 없이 금융회사에 개설된 계좌 및 <u>카드정보</u> 등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. 다만, 제 8 조에 따라 금융회사가 제공하는 비대면채널의 경우 금융회사가 계좌 및 카드정보 조회서비스 제공여부를 선택할 수 있으며, 고객이 제 7 조에 따라 은행창구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활동성 계좌에 대한 상세정보를 확인할 수 없습니다. ② 본 서비스에서 조회되는 계좌 및 <u>카드정보</u> 등은 계좌통합관리서비스</p>	<p>이용기관의미 확대(금융기관포함)</p> <p>문구수정 (이용기관용어반영, 내계좌 지급정지반영)</p> <p>문구수정 (이용기관용어반영)</p> <p>문구수정</p> <p>문구수정</p>
--	--	--

<p>홈페이지 또는 애플리케이션에 게시합니다. ③~ ④ <생략></p> <p>제 11 조 <생략>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u><신설></u></p> <p>제 12 조~제 14 조 <생략></p> <p>제 15 조 (다른 약관과의 관계)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각 항에 준용합니다. ① 은행, 우체국, 저축은행의 경우 예금거래기본약관, 전자금융거래 기본약관,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약관, 관련 예금 및 신탁약관을 준용합니다. ② 상호금융회사의 경우 예(탁)금거래기본약관, 전자금융거래 기본약관,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(탁)금약관, 관련 예금 및 신탁약관 등을 준용합니다. ③ 금융투자회사, 카드사의 경우 전자금융거래 이용에 관한 기본약관을 준용합니다.</p>	<p>홈페이지 또는 애플리케이션에 게시합니다. ③~ ④ <좌동></p> <p>제 11 조 <좌동></p> <p><u>제12조 (계좌지급정지)</u> ① 고객은 제5조, 제6조의 계좌통합관리서비스 홈페이지 및 애플리케이션 등에서 제4조 이용채널에서 조회되는 수시입출금계좌 및 금융투자회사 계좌에 한하여 지급정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. ② 지급정지 신청을 받은 금융회사는 이를 지체없이 처리합니다. ③ 계좌지급정지시 해당계좌에 연결된 직불·체크카드 이용이 제한됩니다. ④ 계좌지급정지가 되더라도 채권 압류·추심 등 법령에 따른 강제집행 및 권리행사가 우선됩니다. 단, 동 서비스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사기이용계좌의 지급정지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. ⑤ 계좌지급정지에 의해 발생하는 자동이체 정지로 인한 결제대금·요금·대출원리금 등의 미납, 연체료 발생 등에 대해 금융회사와 금융결제원은 책임지지 않습니다. ⑥ 계좌지급정지의 해지는 금융회사를 통해 가능하며, 금융회사마다 해지 절차는 다를 수 있습니다.</p> <p><u>제 13 조~제 15 조 <좌동></u></p> <p><u>제 16 조 (다른 약관과의 관계)</u>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각 항에 준용합니다. ① 은행, 우체국, 저축은행의 경우 예금거래기본약관, 전자금융거래 기본약관,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약관, 관련 예금 및 신탁약관을 준용합니다. ② 상호금융기관의 경우 예(탁)금거래기본약관, 전자금융거래 기본약관,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(탁)금약관, 관련 예금 및 신탁약관 등을 준용합니다. ③ 금융투자회사, 카드사의 경우 전자금융거래 이용에 관한 기본약관을 준용합니다.</p>	<p><신설> 내계좌지급정지 반영</p> <p>문구수정 (상호금융기관으로 용어 통일)</p>
---	--	---

<p><u><신설></u></p> <p><u><신설></u></p> <p><u><신설></u></p> <p><u><신설></u></p> <p><u><신설></u></p> <p><u><신설></u></p> <p><u><신설></u></p> <p>부 칙 (2021. 5. 31) 이 약관은 <u>2021. 5. 31.</u>부터 시행합니다. 다만, 제 2 조 제 1 항 제 13 호 및 제 4 조, 제 9 조의 핀테크기업 대상 서비스 제공은 <u>2021. 7. 15.</u>부터 시행합니다.</p> <p><u><신설></u></p>	<p><u>부칙<제정></u> <u>이 약관은 2016 년 12 월 9 일부터 시행합니다.</u></p> <p><u>부칙<1></u> <u>이 약관은 2017 년 4 월 21 일부터 시행합니다.</u></p> <p><u>부칙<2></u> <u>이 약관은 2017 년 10 월 31 일부터 시행합니다.</u></p> <p><u>부칙<3></u> <u>이 약관은 2018 년 9 월 21 일부터 시행합니다.</u></p> <p><u>부칙<4></u> <u>이 약관은 2019 년 5 월 3 일부터 시행합니다</u></p> <p><u>부칙<5></u> <u>이 약관은 2019 년 11 월 11 일부터 시행합니다</u></p> <p><u>부칙<6></u> <u>이 약관은 2020 년 12 월 10 일부터 시행합니다</u></p> <p><u>부칙<7></u> <u>이 약관은 2021 년 5 월 31 일</u>부터 시행합니다. 다만, 제 2 조 제 1 항 제 13 호 및 제 4 조, 제 9 조의 핀테크기업 대상 서비스 제공은 <u>2021 년 7 월 15 일</u>부터 시행합니다.</p> <p><u>부칙<8></u> <u>이 약관은 2022 년 12 월 27 일부터 시행합니다.</u></p>	<p>시행일표기 (이하 동일)</p> <p>날짜표기정정</p>
--	--	--